

## 9. 建築物의 設備基準等에 관한 規則中 改正令

建設交通部令 第51號 1996. 2. 9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제55조 내지 제59조”를 “제55조 내지 제59조, 제59조의2 및 제59조의3”으로, “제87조 내지 제103조”를 “제87조, 제89조 내지 제91조, 제91조의2, 제91조의3, 제92조 내지 제103조”로 한다.

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영 제91조의3 제2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일반목욕장 · 특수목욕장 · 실내수영장 · 냉동냉장시설 · 항온항습시설(온도와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특수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또는 특수청정시설(세균 또는 먼지등을 제거하는 특수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

백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2. 숙박시설 또는 병원으로서 중앙집중식 냉 · 난방설비를 설치하고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3. 판매시설로서 중앙집중식 냉 · 난방설비를 설치하고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4.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절약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건축물

제3조(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사항)  
① 영 제91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 급수 · 배수 · 냉방 · 난방 및 환기의 건축설비(이하 이 조에서 “건축기계설비”라 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이하 “기술사”라 한다)가 건축사의 조정하에 설계를 하여야 한다.  
② 영 제91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 건축기계설비를 설치한 경우

에는 기술사가 그 설치상태를 확인한 후 건축주 및 공사감리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건축기계설비설치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 제1호 바목 및 제2호 마목중 “건설부장관”을 각각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며, 동조 제2항중 “한국공업규격표시품”을 “한국산업규격표시품”으로, “건설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다만, 강제순환방식 보일러를 설치하고 방열관의 간격을 150밀리미터이상 200밀리미터이하로 할 경우에는 방열관의 지름을 12밀리미터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승강기의 구조)** 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강기·에스컬레이터 및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는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9조 본문중 “건설부령”을 “건설교통부령”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비상용승강기 및 그 승강장의 구조)”를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로 하고, 동조 본문 중 “비상용승강기 및 그 승강장”을 “비상

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로 하며, 동조 제1호를 삭제하고, 동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비상용승강기의 승강로의 구조

가. 승강로는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할 것

나. 승강로는 전층을 단일 구조로서 연결하여 설치할 것

제11조 제1항중 “법 제58조 제2항”을 “법 제58조 제1항”으로 하고, 동조 제2항 제1호 및 제3항 제1호중 “건축물의 연면적”을 각각 “건축물의 연면적(옥내주차장면적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절수설비)** 소변기를 따로 설치하지 아니하는 화장실에 설치하는 절수설비는 사용목적에 따라 수량이 조절되는 대변기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절수효과가 있는 대변기로서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제13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보일러의 연도는 내화구조로서 공동연도로 설치할 것

제14조 제1항 제2호중 “배연구의 면적”을 “배연구의 유효면적”으로 하고, 동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바닥면적의 산정에 있어서 거실바닥면적의 20분의1이상으로 환기창을 설치한 거실의 면적은 이에 산입하

지 아니한다.

제14조 제2항 본문중 “영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피난계단”을 “건축법시행규칙 제26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피난계단”으로 하고, 동항 제2호중 “열감지기”를 “열감지기 또는 연기감지기”로 하며, 동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공기유입방식을 급기가압방식 또는 급·배기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방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게 할 것 제15조를 삭제한다.

제16조 제5호중 “건설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 제2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 제3항을 삭제한다.

5. 우수관과 오수관은 분리하여 배관할 것

6. 콘크리트구조체에 배관을 매설하거나 배관이 콘크리트구조체를 관통할 경우에는 구조체에 덧관을 미리 매설하는 등 배관의 부식을 방지하고 그 수선 및 교체가 용이하도록 할 것

제18조 제3호를 삭제한다.

제20조 제4호 및 제5호중 “한국공업규격”을 각각 “한국산업규격”으로 한다.

제21조 제3호중 “건설부장관”을 “건설교

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 제2호 내지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업무시설·연구소가 기타 에너지소비 특성 및 이용상황등이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3. 숙박시설·기술사·유스호스텔·병원 기타 에너지소비특성 및 이용상황등이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4. 일반목욕장·특수목욕장·실내수영장 기타 에너지소비특성 및 이용상황등이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백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5. 판매시설 기타 에너지소비특성 및 이용상황등이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중앙집중식 냉·난방시설비를 설치하고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6. 연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이상인 관람집회시설·학교 기타 에너지소비 특성 및 이용상황등이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중앙집중식 공기조화설비 또는 냉·난방설비를 설치하는 건축물

제23조 제1항 본문중 “건설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고, 동조 제2항중 “동력자원부장관이 건설부장관”을 “통상 산업부장관이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4중 “인천직할시”를 “인천광역시”로, “대전직할시”를 “대전광역시”로, “광주직 할시”를 “광주광역시”로, “대구직할시”를 “대구광역시”로, “부산직할시”를 “부산광 역시”로 한다.

별표 5 비고란 제1호중 “동법 제37조”를 “동법 제47조”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중 “건축법시행령 제88조 제3항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3조”를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으로 한다.

##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 제6호의 개정규정은 건설교통부장관이 당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설계기준을 고시한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신청을 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음용수배관재료 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제1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건설시험소장에게 음용수의 배관재료의 인정을 신청한 것에 관하여는 제1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개정이유◇

건축법(1995. 1. 5, 법률 제4919호) 및 건축사법(1995. 11. 30, 대통령령 제14891호)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가. 승강기·에스컬레이터 및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는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르도록 하고, 이 규칙에서는 승강장 및 승강로의 기준만을 정함(제6조 및 제10조).
- 나. 비상급수설비의 규모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건축물의 연면적에 급수수요가 없는 옥내주차장면적은 포함시키지 아니하도록 함(제11조).
- 다. 건축물에 설치하는 배수관은 오수관과 우수관으로 분리하여 배관하도록 하여 수질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함(제17조 제2항 제5호)                          <건설교통부 제공>

**가격경쟁 부실공사 기술경쟁 성실공사**